

	<h2 style="margin: 0;">계약학과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	6-3-26	
			제정일자		2020.03.01	
	개정일자					
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	5		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학칙 제4조의3에 의해 설치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계약학과”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학부·학과를 말한다.
- ② “원격수업”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% 이상이 원격(방송·통신)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(수업자료 탑재, 질의·응답, 토론 등)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- ③ “이동수업”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으로 교수가 대학 소재지 외의 장소로 학생들을 찾아가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학위과정)** 계약으로 설치하는 학과(이하 “계약학과”라 한다)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(이하 “전문학사과정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**제4조(설치유형, 정원 및 학위)**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.

- 1.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: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
  - 2. 재교육형 계약학과 :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
- ② 설치하는 계약학과의 명칭,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[별표 1]과 같다.
- ③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.
-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모집정원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.

## 제2장 계약학과 운영 관리

**제5조(설치·운영기간)**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 기간은 전문학사과정 2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
2. 계약학과의 설치 및 폐지
3.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4.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
5. 계약학과 교과과정 편성

**제7조(운영)** 계약학과의 학사관리는 교학처의 지원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.

**제8조(폐지)** 계약학과의 폐지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한다.

## 제3장 입학(편입학) 및 등록

**제9조(입학자격)** ①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다.

② 채용조건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며, 재교육형의 경우 산업체 재직기간을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으로 하고, 학생신분으로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 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③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,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.

**제10조(학생의 선발)** ① 계약학과의 입학·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,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산업체 관계자가 면접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대학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 다만, 대

학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.

1. 서류전형(실무경력 포함)
2. 면접고사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대학의 입학·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,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편입학 자격)** 본교 편입학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**제12조(등록 등)** ① 계약학과 학생은 매 학기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등록은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등의 부담금(이하 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을 하여야 완료된다.

③ 등록금의 부과는 학기별로 부과한다. 단, 재교육형 관련 계약학과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에 따른다.

⑤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에 따른다.

## 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

**제13조(학기)**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.

**제14조(수업일수)**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
**제15조(수업)**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·운영되어야 하며, 대학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수업은 출석수업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50%이상(학점 기준)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의 전임교원은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%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학생보호

**제16조(계약학과 폐지 등)** ①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·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,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모체학과로 한다.

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, 징계해고, 계약기간 만료로

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산업체 등의 도산, 구조조정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·계속되는 휴업(휴직)·사업장 이전·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,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,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.

## 제6장 회계관리

**제17조(회계관리)**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8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)**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, 산업체 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, 산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## 제7장 보 칙

**제19조(준용)**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계약학과 명칭·학생정원·학위명

학과	입학정원	수여학위
정보전자공학과 (P-TECH 과정)	40명	전문학사